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 제공
-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출연기관 : (재)구미시장학재단 * 서울 구미학숙 운영기관
 - 출연금액 : 150백만원(운영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동선동2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원
- 운영예산 : 430백만원(출연금 150, 입사생수입 170, 전기 이월금 110)

○ 출연의 필요성

- 학숙 입사생들에게 쾌적한 주거·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학숙 운영 소요예산 충당 및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4.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구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면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학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향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과 시설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학숙 시설을 단순 거주 공간을 넘어 지역인재 네트워킹과 취업 지원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